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자료**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7월 21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21(화) 오전 06:0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7. 20.(월)	담당부서	재생에너지산업과
담당과장	윤성혁 과장(044-203-5370)	담 당 자	우태영 주무관(044-203-5378)

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

- 전력 다소비 공간 산단,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 -
-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지원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7.21일(화)**부터 **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**하고, **7.27일(월)부터 신청접수**를 받는다.

□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**제3차 추경**(7.3일)을 통해 **총 1,000억원의 예산이 반영**되어 **신규로 시행**하는 사업으로,

○ **산단 유휴부지** 또는 **공장 지붕**을 활용한 **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**나 **해당 대상지 임차인** 등은 이 사업을 통해 **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%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.**

<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요 >

❶ **지원대상** : **산업단지 내 유휴부지**(주차장 등) 또는 **공장 지붕**(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공장도 가능)에 설치하는 **태양광 발전설비**

❷ **지원조건** : △**이자율** : 분기별 변동금리(1.75%) △**대출기간** :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△**지원비율** : (중소기업) 90% 이내 (중견기업) 70% 이내

❸ **신청기간** : 20.7.27(월)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

* **산업단지** :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6조~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농공단지로 구분됨

* **공장의 경우**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필요

□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**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, 발전사업 허가증** 등 **관련 서류를 구비**하여 한국에너지공단 **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**(www.knrec.or.kr)를 통해 **7.27일부터 접수**할 수 있다.

□ 산업부는 "**산업단지 태양광**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**환경훼손이 없고**,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**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 모델**로서,

○ 이 사업을 통해 **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**하는 한편, **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**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**에너지 자립도를 제고**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"고 밝혔다.

□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문 등 **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**은 **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**(www.knrec.or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[첨부] 2020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(산단태양광) 2차 공고문(안)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우태영 주무관(☎ 044-203-5378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